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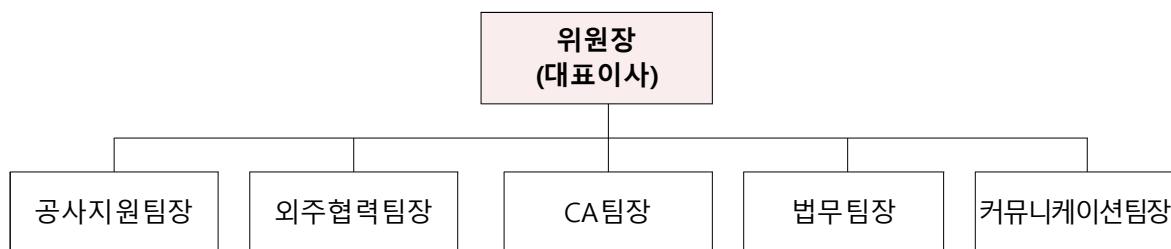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제 1 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하도급 거래 등에 있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내법규를 준수하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상생경영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조직구성)

- ① 상생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 ② 상생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위원회 운영)

- ① 심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현안 발생시 위원은 심의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체 심의위원 70% 이상 참석시 개최한다.
- ②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기준이나, 불일치시 참석인원 70%이상, 과반수 이상 찬성시 가결한다.
- ③ 해당 위원이 불참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직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한 임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결을 통해 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조 (상생경영위원회 심의 사항)

- ① 하도급법 준수 관련 사전 심의사항
 1.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 계약금액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심의 (저가심의 포함)

<심의사항 예시>

- 1) 서면계약서 교부의무 준수여부
- 2)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준수여부
-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4) 물품 등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5)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6) 경영상 정보 요구행위 금지 위반여부
- 7)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위반여부 등

② 하도급법 준수 관련 사후 검증 사항

1.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심의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 점검 및 시정 등 적법성 사후검증

<심의사항 예시>

- 1) 지급기한 내 직접 대금지급 여부
- 2) 합당한 하도급대금 조정여부
- 3) 하자보수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 4)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 5) 부당행위금지 준수여부
- 6) 경영상 정보 요구행위 금지 위반여부
- 7)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위반여부 등

③ 공정거래법 준수 관련 심의사항

1. 입찰 진행 시 협력사 담합행위 예방 활동
2. 거래 관계에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여부

④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관련 심의사항

1.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2. 협력업체 미선정(신규)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3.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을 보장한다.

⑤ 협력업체 관리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 협력업체 포상 및 제재대상 상벌 수위
2. 협력업체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관련 사항

<동반성장 관련 심의사항 예시>

- 1) 동반성장협약 대상 협력업체 선정의 적절성
- 2) 전분기 동반성장 이행실적
- 3) 프로그램 추가·삭제 및 적절성 등

⑥ 협력업체 협상력 및 지위 제고에 관한 사항

1. 하도급법 등(공정거래법) 관련 이슈 및 이에 대한 분쟁 조정 사안
2.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실적
3.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⑦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위원회 회부)를 심의하여 결정

⑧ 회사 및 협력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형평성 있는 페널티 심의·의결

⑨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 5 조 (협력업체 교육 및 지원)

① 각 부문(실)장은 협력업체 육성을 위해 교육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 회사와의 업무과정에서 협력사가 느끼는 만족, 불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 및 요청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1. 반기별 1회(매년 1월, 7월이나 시기는 여건별 조정이 가능하다)

2. 내용

가. 회사의 대 협력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만족수준

나. 각 항목별 불만족 사유

다. 개선 및 건의사항 등

라. 방법 : 각 업체별 동반성장지원센터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메뉴 설문조사

3. 결과 : 연 2회 항목별 만족도 및 중요도 대비 분석, 협력업체 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제 6 조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제재의 원칙

1.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하도급법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생경영위원회는 하도급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며,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재의 종류 및 기준

1.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견책 이상의 중징계>

1) (경쟁당국*에 의해 사건화 된 경우)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도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경우

2) (경쟁당국에 의해 사건화 된 경우) 하도급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상생경영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4)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상당하여 향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고 도 임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경쟁당국 :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국내의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주의 또는 경고>

1)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그 준수를 태만히 한 경우(경쟁당국에 의해 사건화 된 경우)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도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경우

2) 상생경영위원회가 행한 명령이나 지시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2.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서에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재의 부과·집행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부서 경고>

1) (경쟁당국에 의해 사건화 된 경우)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도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경우

2) (경쟁당국에 의해 사건화 된 경우) 하도급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제재의 절차

가. 상생경영위원회는 하도급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자

에 대해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후 결정한다.

나. 상생경영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준을 정하고 제재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생경영위원회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 회사의 경영여건 및 법규·정책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